

# 심 사 보 고 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28
----------	-----

2019. 12. 16.(월)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9년 11월 27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9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12월 4일

-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사유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39조의19에 의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 사무실 및 쉼터 수탁기관 제공
- 위탁기간 : ‘20. 3. 1. ~ ’ 24. 12. 31.(4년 10개월)
- 수탁기관 : 도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포함)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업비
  - 노인보호전문기관 : 670,944천원(국비50%, 도비50%) ※ 기관당 335,472천원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88,236천원(국비50%, 도비50%)
- 위탁 주요사무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현장조사</li><li>-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자 상담</li><li>- 노인학대예방교육</li><li>-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li><li>- 치유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li><li>- 그 밖에 쉼터입소 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ul>

## 3. 검토보고 요지 (이강근 수석전문위원)

### 가. 제출배경

-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설치되어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 및 현장조사, 사례조치, 사후관리와 학대피해 노인 가족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어르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인 ‘충청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충청북도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과, 같은 법 제39조의 19에 따라 설치되어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의료비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와 관련해,

- 노인관련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 경험을 활용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적의 제출되었음

**※ 現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구 분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재지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17	충주시 예성로 76
지정일	2004. 8. 24	2008. 10. 1
기관장	최정목('65. 9. 10.)	배선희('70. 8. 19.)
지원액	· 388,172천원 ※ 지원유형 :“가”형(인건비10명)	· 306,452천원 ※ 지원유형 :“다”형(인건비8명)
관 할	· 중남부권 6개 시군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 북부권 5개 시군 (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운영법인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기관장, 사회복지사 1명 겸직)

소재지	입주형태	면적	임차료	지원액	종사자	운영일
청주시 청원구	무료임차 (법인소유)	84.07㎡ (방3)	무상	185,412천원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11.4월

## 나. 검토의견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일 2018. 10. 01)에서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4회차 마다 의회의 재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에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5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개소 시점부터 공모절차 없이 도지사 지정으로 위탁이 추진되었고, 지금까지 재계약절차도 없이 계속 사업 위탁을 유지해 왔기에,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있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위탁지정 사유:** 충북에서는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시행 이전에 (재)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공동모금회 기금 사업으로 3년 동안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지원하는 '노인의 전화' 사업을 진행해 왔고,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차원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충청도에서는 기존 사업 경력이 있는 (재)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지정위탁을 추진함. 또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14에 따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므로, 공개모집으로 수탁법인을 선정토록 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따르고, 「노인복지법」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에 따라 공고를 통해 위탁기관을 모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부칙제2조에 따라 2020년 민간위탁 공고를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 이는 상위법령에 따른 조치로 타당함

○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민간위탁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 인구 고령화와 어르신 부양 부담,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어르신 학대사태가 매년 보합세 또는 소폭 증가하고 있고,
- 학대피해 어르신의 인권 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 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충청북도 노인학대 통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19. 9월말		
				총복	복부	합계
일반신고	395	484	476	243	219	462
학대의심	194	165	139	77	46	123
합 계	589	649	615	320	265	585

- 즉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른 위탁대상 사무에 포함될 수 있음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5.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

- 본 위원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미동의 상태의 위탁사무에 대해 위탁 절차를 밟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담당 관리부서에서는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들이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8
----------	-----

제출연월일 : 2019년 11월 2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노인복지법」제39조의5, 제39조의19에 의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사무실 및 쉼터 수탁기관 제공
- 위탁기간 : '20. 3. 1. ~ '24. 12. 31.(4년 10개월)
- 수탁기관 : 도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포함)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업비
  - 노인보호전문기관 : 670,944천원(국비50%, 도비50%) ※ 기관당 335,472천원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88,236천원(국비50%, 도비50%)
- 위탁 주요사무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현장조사</li> <li>-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자 상담</li> <li>- 노인학대예방교육</li> <li>-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li> <li>- 치유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li> <li>- 그 밖에 쉼터입소 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 3. 참고사항

#### 가. 現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현황

##### □ 노인보호전문기관

구 분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재지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17	충주시 예성로 76
지정일	2004. 8. 24	2008. 10. 1
기관장	최정목('65. 9. 10.)	배선희('70. 8. 19.)
지원액	· 388,172천원 ※ 지원유형 :“가”형(인건비10명)	· 306,452천원 ※ 지원유형 :“다”형(인건비8명)
관 할	· 중남부권 6개 시군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 북부권 5개 시군 (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운영법인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소재지	입주형태	면적	임차료	지원액	종사자	운영일
청주시 청원구	무료임차 (법인소유)	84.07㎡ (방3)	무상	185,412천원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11.4월

※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기관장, 사회복지사 1명 겸직)

#### 나. 관계법령 : 별첨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노인복지법」제35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설치)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20조의14(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함께하는 3민  
일등경제 충북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

##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안)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안)**

충청북도·충청북도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충청북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운영계획입니다.

## I. 관련규정

- 「노인복지법」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20조의14(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 II. 위탁개요

### 1] 위탁대상시설

구 분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위 치	청주시	충주시	운영을 희망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소재지
시설규모	수탁법인이 사무실, 프로그램운영실 확보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수탁법인이 쉼터 확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지원유형	“다”형(종사자 8명)	“다”형(종사자 8명)	종사자 4명
사 업 비	335,472천원	335,472천원	188,236천원
관할구역	중남부권 5개 시군 (청주, 증평, 보은, 옥천, 영동)	북부권 6개 시군 (충주, 제천,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1개 시군

※ 사업비는 2020년도 총예산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연도별 변동)

2] 위탁기간 : '20. 3. 1. ~ '24. 12. 31.(4년 10개월)

### ③ 위탁방법 : 공개모집

### ④ 신청자격

- 접수일 현재 도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포함)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운영 취소 내지 해지 처분을 받거나 법인 또는 대표자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은 제외
  - ※ 수탁 선정 후 발견 시에는 수탁 선정을 무효로 함

### ⑤ 위탁사무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의심사례 현장조사
  -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Ⅲ. 세부 추진계획

#### ① 위탁 운영조건

##### ○ 위탁조건

- 법령·조례·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 성실히 수행
- 사업 공간 확보 및 임대운영 시 임대보증금 수탁자 부담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고용승계
-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 ※ 보조금 이외의 추가 필요예산 자부담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부담

##### ○ 위탁의 취소

-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 사용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수탁자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기타 수탁자이 의무 및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② 신청에 관한 사항

##### ○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공고

##### ○ 공고기간 : '20. 1. 2. ~ 1. 21./ 20일간 ※ 재공고 1. 29. ~ 2. 7./ 10일간

##### ○ 접수기간 : '20. 1. 22. ~ 2. 23./ 2일간 ※ 재접수 2. 10. ~ 2. 11./ 2일간

#####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 신청서류

- 1)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 1부.
- 2) 법인정관 1부.
- 3)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1부.
- 4)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 7)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1부(자격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

-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9) 기타 수탁자의 위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③ 수탁자 선정방법

- 개최시기 : '20. 2. 21.(금)
- 심의위원회 구성 ※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자동해산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구성인원 : 6명(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 사회복지 전문가 5)
  - 자격요건
    -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
- 심사항목
  - 1) 재정적 능력(20점) : 법인의 자산보유현황, 부채현황 등
  - 2) 공신력(20점) : 법인의 설립목적, 업무관련성, 노인복지 업무실적 등
  - 3) 사업수행능력(4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재정확보 계획의 적정성 등
  - 4)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20점) : 유관기관과의 협력구축 등
    - ※ 신청법인의 기관운영 예산 관련 자부담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 각자의 항목별 점수부여
  - 평가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별 배점결과, 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법인 중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
  - 1개 법인이 신청하였을 경우 추가공모(2개 이상의 법인이 신청하였을 때 심의)
  - 단, 추가공모에도 1개 법인만이 신청할 경우 그 법인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2개 이상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위원회에서 전부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공모
  - 선정기관이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선정

#### 4] **협약체결 및 공증**

- 체결 시기 : '20. 2월 말까지
- 내 용 :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 업무 인계.인수

#### **IV.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9. 12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 1월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 2월
- 수탁자 선정결과 발표(도 홈페이지) : '20. 2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 2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 12. 29.>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쉼터의 설치기준·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14.]

##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① [법 제39조의5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8.]

[제2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7은 제20조의8로 이동 <2018. 4. 24.>]

제20조의14(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를의 위탁) ① 시·도지사는 [법 제39](#)

**조의19 제3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을 받아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업무를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5.]

[제20조의13에서 이동 <2018. 4. 24.>]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5 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1. 12. 8.>

② **법 제39조의5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0. 4. 26., 2011. 12. 8., 2015. 1. 16., 2019. 7. 5.>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4. 삭제 <2015. 1. 16.>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으로 한정하고,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는다)

6. 삭제 <2019. 7. 5.>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7. 5.>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0. 4. 26., 2011. 12. 8., 2019. 7. 5.>

⑤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0. 4. 26., 2019. 7. 5.>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 [본조신설 2004. 8. 7.] [제29조의6에서 이동 <2010. 4. 26.>]

**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① 시·도지사는 영 제20조의13 제1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을 기관의 수
2. 위탁 기간
3. 위탁 신청 절차
4.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영 제20조의13 제1항 전단에 따라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별지 제20호의22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정한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③ 시·도지사는 컴퓨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별지 제20호의2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컴퓨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컴퓨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0호의23서식의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컴퓨터의 장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변경된 컴퓨터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 구조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 [본조신설 2017. 9. 15.]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